



# 서울신용보증재단

수신자 내부결재  
(경유)

제목 재단 본점사옥 지하대강당 서울시민 개방(안)

---

서울시 시책에 적극 동참하며 본점사옥 시설물 개방을 통한 서울시민들의 문화공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재단 지하대강당 서울시민 개방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.

- 다 음 -

## □ 추진배경

- 재단 시설물 대개방을 통한 서울시민들의 문화공간 활성화, 시민편의성 증대
- 미사용시 유휴공간인 지하강당 적극활용을 통한 공간효율성·임차수익 증대
- 서울시 협조공문(사회혁신담당관-4983호)에 의거, 서울시 시책에 적극 협조

## □ 추진일정 및 대관내용

- 진행일정
  - 4월 서울시 투자·출자·출연기관장 공공시설 개방관련 회의..... 4월 5째주
  - 서울시 공공시설 개방 협조관련 대관신청 메뉴개발 전산요청..... 5월 1째주
  - 재단 홈페이지 내 '대관서비스 메뉴' 개발 및 구현..... 5월 2째주
  - 서울시 '공공서비스예약' 메뉴와 시스템연계 완료..... 5월 3째주
  - 지하대강당 서울시민 대개방 및 대관예약 접수..... 5월 4째주
- 대관시간 : 09:00 ~ 17:00 (평일만 가능)
- 대관자격
  -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 있는 단체
  -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, 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자
- 대관방법
  - 대관신청서 작성 후 직접제출 또는 이메일 접수
  - 재단 대관심사 및 이용승인 통지
  - 예약자 대관료 입금 및 대관시설 이용

○ 대관절차

- 예약신청 : 이용예정일 7일전(17:00까지)
- 이용승인 : 예약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
- 이용료 납부 : 이용승인일로부터 2일 이내
- 시설이용 : 이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

○ 이용제한 및 취소

-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-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-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-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사용목적에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
-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행위의 제한
  - 흡연,음주 또는 취식행위
  - 고성 및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

○ 이용료 : 154,000원(vat포함)/(기본) 2시간

※ 기본시간 사용 후 초과 1시간마다 기준금액의 50% 할증

- 붙임 : 1. 대관이용 지침서 1부.  
2. 대관신청서 및 사용 서약서 1부.  
3. 대관료 반환 신청서 1부.  
4. 『공공시설 개방 활성화 관련 협조 요청(사회혁신담당관-4983,2015.04.29.)』 1부  
. 끝.

---

★과장

팀장

부장

이사

이사장

협조자 재무팀장

감사실장

관재팀

감사번호

**129**

시행 관재팀-278

( 2015.05.12. ) 접수

(

)

우 135-97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서울신용보증`재단 17 /<http://www.seoulshinbo.co.kr>  
층

전화 / (02)2174-5115 /전송 (02)3278-8115 / lshoon@seoulshinbo.co.kr / 공개